



'25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공고 현장 설명회

2025.02.18.(화) 14:00 ~ | KEIT 도전혁신실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

CONTENTS

- I 사업개요
- II 사업추진체계
- III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IV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V 평가 절차 및 기준
- VI 기업멤버십제도
- VII 근거 법령 및 규정
- VIII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IX 제출 서류 사항
- X 기타 유의사항
- XI 문의처 등

0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 영역 창출
-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전분야

연구개발과제 유형

- (자유공모) 창의적 R&D 수행을 위해 과제 RFP 보다 상위의 테마 개념 및 범위만 제안하는 방식
- (테마정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은 테마정의서에 부합하는 과제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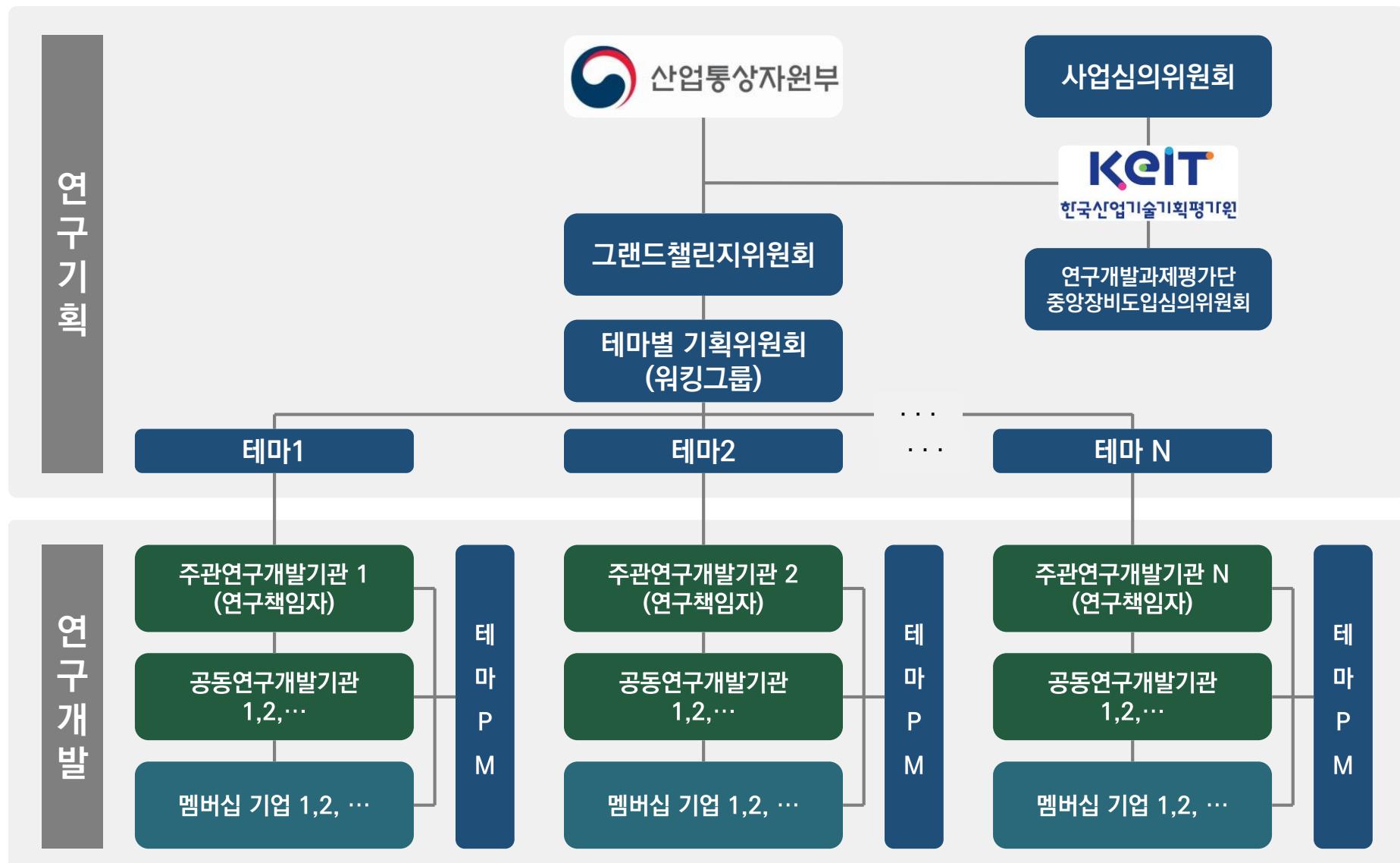
0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개념연구	선행연구	본 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 없음		
지원기간	9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내외
지원규모	연간 최대 1.9억원 내외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테마정의서 참조)	연간 5억원 내외	연간 40억원 내외
선정범위	테마별 6개 연구개발 과제 내외(경쟁형 R&D)	테마별 3개 연구개발 과제 내외(경쟁형 R&D)	테마별 1개 연구개발 과제 내외(경쟁형 R&D)
기술료	징수		

경쟁형 R&D

선정·단계 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주요용어설명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혁신적 테마 기획·선정을 위해 기술·인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워킹그룹)** 테마의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세기획 담당 그룹으로, 5인 내외로 구성
- **(테마)** 구체적인 요구 사양이나 과제 단위의 제안이 아닌 미래 산업적 파급력과 혁신성이 큰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제 형태의 품목
- **(테마PM)**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기획–연구개발–성과확산까지)를 관리하는 테마 책임관리자로 3인 내외로 구성
- **(멤버십기업)** 직접 R&D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는 달리, 개발기술에 대한 수요기업군으로, 시장 수요 의견 전달, 기술 사업화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

0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공통사항)**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舊민간부담금)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 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에서 현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수요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참여 연구자 인건비)로 구성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에 해당하므로,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0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단, 수요기업 여부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판정
- 산업위기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국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그 외’기준 적용하여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산정 가능

0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비율 적용 가능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만 부담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2항 및 제25조 4항의 “핵심전략기술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부담 가능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0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1호~5호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 기관’으로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실시계약 체결	실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직접 실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0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②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0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사업 공고 기준 6개월 이전('24.8.13.)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 → 신규인력 간주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부터 연구개발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기존인력이라도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구체적 산정 기준은 공고문 및 규정 참조)

0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1호 가목~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의 협약 시점 기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 부담에 따른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가능
- 청년연구인력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 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 올림)하여 최대 만39세 까지 인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참조

0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교육 종료 이후 인건비),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3.)부터 과제 종료 시점까지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 인력은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 50% 초과 불가)
-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연구개발비 정산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필수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연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비율 중 직접비 집행 비율 초과 분은 반납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일괄, 단계)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에서 증액 불가!**

0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1항)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
- 3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또는 차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제40의 3호에 따른 “안전 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절한 안전조치와 점검을 실시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함
 -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특정 연구기관에 한함

01. 지원분야 →

▪ 연구개발과제 유형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일반형	원천기술형	품목지정 (자유공모)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제시된 품목(테마)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01. 지원분야 →

▪ 지원대상 연구개발 테마 목록

번호	테마명	개념	이미지
1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 초월 (언제, 어디든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전도, 우주발전 등 첨단기술로 생성된 다양한 에너지들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달하여 전력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2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스스로 진화하는 사이버 아이언돔)	AI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자동학습·진화를 통해 발전하는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방어하는 보안 기술	
3	Neuro-AI Fusion 슈퍼 휴먼 (신경-AI 인터페이스 기반 신체 능력 증강 기술)	AI와 신경신호를 실시간으로 학습·제어하여 노화·장애를 극복하고 신체 능력을 증강하는 이식형 기술	

01. 지원분야 →

- 지원대상 연구개발 테마 목록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창의적 R&D 수행을 위해 테마의 개념 및 범위만 제시하고, 해당 테마 내에서 세부 연구개발과제 및 방법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자유공모**” 과제
 - ‘R&D 자율성 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 단,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R&D 자율성 트랙 신청은 2, 3단계 과제를 대상으로 함**

R&D 자율성트랙(舊 R&D 샌드박스) 신청

-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 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은 ‘Moving Target’제도 운영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과제로써, R&D 자율성 트랙(지정) 과제에 해당됨
 - * R&D자율성트랙(지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비공개(보안)과제 신청불가)
 - ‘R&D자율성트랙’ 관련 세부 신청자격 및 혜택 등은 별첨6.‘R&D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0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5에 해당하는 기관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에 한정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별도의 제한 없음
 -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0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협약단계 각각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 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 해소 시 선정평가에 상정 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은 불허))
 - ※ 사전지원제외 상세 요건 관련하여, 공고문 및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가능

04. 테마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테마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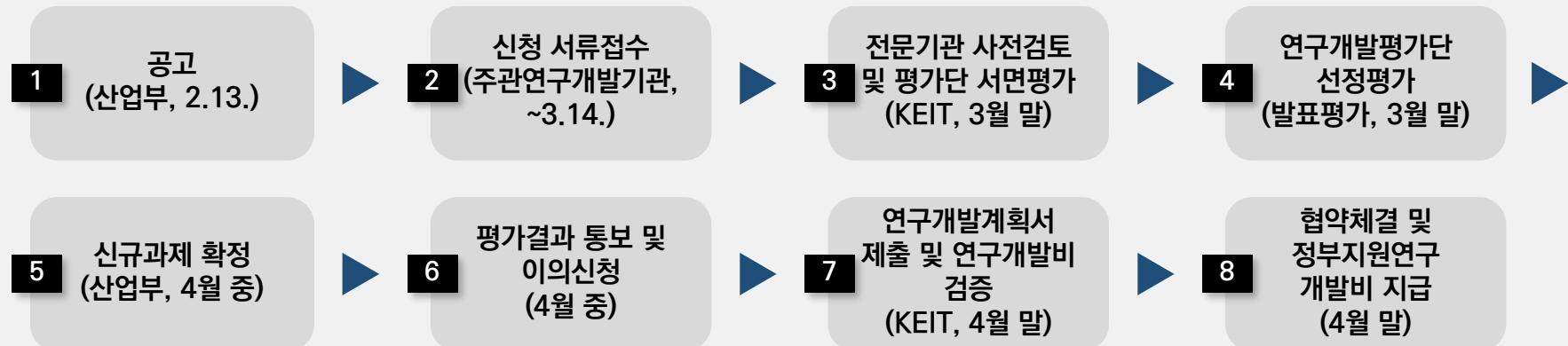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5. 2. 13.(목) ~ 3. 14.(금)
- 제기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도전혁신실(☎ 053-718-8363)

01. 평가절차 →

▪ 평가 절차 및 평가 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접수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과제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은 제출하지 않고 **발표자료(ppt) 형태의 제안서만 접수**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서면평가 : 테마별 지원 과제가 2배수를 초과(13개 이상)하여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발표자료 평가)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테마별 12개 이내)를 선정

01. 평가절차 →

- 선정평가 : 평가단은 신청기관의 발표자료(ppt)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고득점 순(70점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선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선정평가 전, 신청서류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토를 통해 질의를 사전에 도출하고,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서면평가와 선정평가의 평가 기준(항목)은 ‘5-2.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0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번호	세부항목	배점
1	• 본 연구의 도전성/혁신성 (현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창의적인 연구개발 방법 등)	20
2	•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테마와의 부합성 (대상 및 범위)	
3	• 본 연구를 통한 10~20년 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시장 창출 가능성 * (시기 적절성) 2030~40년대에 실현 가능 여부	20
4	•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적 이슈 해결 가능성	10
5	• 향후 우리나라가 본 연구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가능성	10
6	•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지니는 차별성(원천성*)	20
7	• 연구진 연구역량 (전문성, 역할분담,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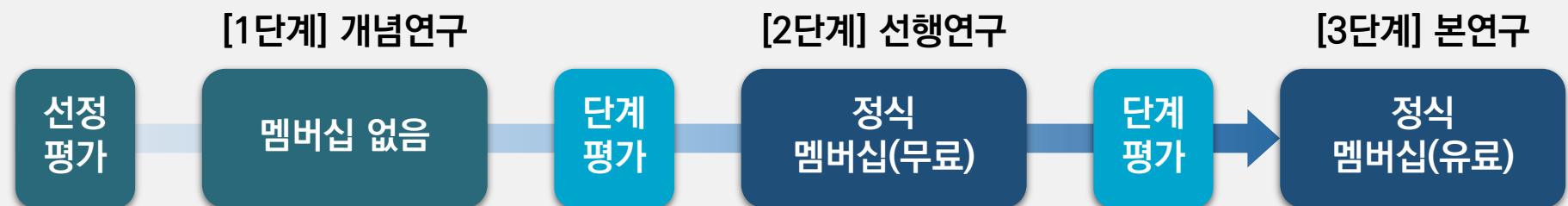
- 원천성 : 다른 기술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을 의미하며 향후 표준 특허 중 필수 특허로 지정된 기술이나, 향후 삼극특허 등록 기술이면서 특허 인용 네트워크상의 최상위급(10% 이내) 기술

02. 평가기준

- PPT 발표자료는 상기 평가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내용과 순서는 정형화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0분 발표/20분 질의응답)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고득점 순(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출평균, 70점 이상)으로 테마당 6개 내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분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01. 기업멤버십 개요

-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하는 「기업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화 성과 창출 도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단계(선행연구)부터 개발될 기술·제품에 관심을 갖는 기업을 모집하고 멤버십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 * 단계 평가시 기업멤버십 구성·운영을 평가요소(멤버십 기업의 참여의향, 협력방안 등)로 검토할 예정
 - * 3단계(본 연구) 기간부터 연구개발과제별 유료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정의 비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불하고 가입 가능하고, 비용은 현금, 현물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 멤버십 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실시 계약 체결, 가입 절차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 기업간 자율 계약 실시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02. 신청 자격

- 멤버십 기업은 가입 시점 이전에 국내 사업자(개인, 법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03. 기업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 연회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회비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준하여 사용하고 사전 계획성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기업멤버십 운용계획 및 연회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전문기관과 멤버십 기업에게 공지 필수
- 연회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기업 간 자율 협상에 의해 결정(**현물 가능**)
 - * (예) 중소기업 200~400만원, 중견기업 400~800만원, 대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가입·탈퇴 가능하나, 중도 가입 시 연구개발과제 내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동의 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동 기간 중 미납 회원비의 일시 납입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비, 추가 R&D 비용, 참여연구자 인센티브, 정보수집 비용 등 자율적 사용

03. 기업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 기업멤버십 지식재산권(IP) 관리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IP 실시권에 대해 ‘알키미스트 멤버십 기업’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실시 계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전용권* 실시를 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한 연구개발기관(비영리, 영리)과 멤버십 회원사간 협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하에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의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상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상호협력동의서’를 2단계(선행연구)에서 체결하고 이때, 개발 종료 이후 해당기술의 실시권에 행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01.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01.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ppt)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분	기간
공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기간 : 2025. 2. 14(목) ~ 3. 14(금)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교부 : 2025. 2. 20(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기간 : 2025. 2. 14(목) ~ 3. 14(금) 18:00까지 <p>*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p>
지원사업 공고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 2024. 2. 18.(화) 14:00~• 장소 :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

01.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 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접수 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01. 제출 서류 사항 →

번호	서류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발표자료(ppt) 제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업)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업)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01. 제출 서류 사항 →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2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p>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p> <p>*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 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 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 적 불가)</p>	<p>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 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 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 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p>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p>

01. 기타 유의 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 멤버십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료는 비징수
 -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연구개발과제
 -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01. 기타 유의 사항 →

- 외부 기술 도입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및 테마정의서를 참조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01. 기타 유의 사항 →

- 접수결과 미응모인 테마에 대해서는 동일 테마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테마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 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01. 기타 유의 사항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로 결정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01. 기타 유의 사항 →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01. 문의처

- 상세 테마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테마(기획의도) 관련 상세 문의

테마 분야	성명	직위	연락처
Ultimate 반도체 (극한 환경용 미래 반도체 소자)	박경진	실장	053-718-8346 (kjpark@keit.re.kr)
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소통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Idea to Product (초연결 지능 제조 플랫폼)	김대중	수석	053-718-8363 (blue24t@keit.re.kr)

감사합니다

Thank you

01. 과제 제안 시 1개의 기관만 참여한다면 통합양식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지?

- 1개의 기관(주관)만 과제 신청을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02. 기업 및 특허 사무소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했을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

- 별도의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특허사무소와 관련하여 차 단계 통과에 따라 향후 멤버십기업 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 및 IP 권리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매 단계마다 새롭게 협약을 해야 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에도 일괄 협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단계 과제로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 평가 이후 협약 변경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04. 기간별 목표 수준은 무엇인가요?

- 1단계는 “개념 연구”로써, 미래 사회상에 맞는 테마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선행 연구 ”로써, 1단계의 아이디어 기획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 “본 연구” 단계는 1, 2 단계를 거쳐 구체화한 과제 내용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향후 10~20년 후의 신산업, 신시장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05. (4번 질문과 연계)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은?

- 1단계 평가 기준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대로, 아이디어의 개념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테마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배점표 참고)
- 2, 3 단계 평가 기준은 1단계 평가기준과 상이합니다. 특히 3단계 평가 시에는 선행연구 추진실적이 중요하며, 기업 멤버십 등 향후 기술성이나 산업 연계성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입니다.

06. 차 단계 진출 시 주관기관 변경 및 컨소시엄 변경 가능한지?

- 단계 평가 이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단계평가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통해 위원회 확정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실제로 주관기관 변경 사례도 있으며, 단계별 연구과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컨소시엄의 변경(주로 확장)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연구자들께서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